

의안번호	제 62 호
의결연월일	2003. 4. 22

##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4. 11. 예산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4. 11.

다. 상정일자 : 2003. 4. 11.

제10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무과장 : 이명선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공용·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, 또한 세외수입원으로서의 적극적 활용방안이 요구됨.
- 따라서 금번 개정계획은 공유재산의 대부료·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, 공유재산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,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던 것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- 또한 군 청사 등의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서 지방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적용코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사용·수익 허가시 허가조건 명시
  - 행정재산·보존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, 사용기간,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이외에 허가조건을 명시  
(안 제14조)
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
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·영세농가 등에 적용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(안 제22조제1항)  
이자율 : 5%(현행) ⇒ 4%(개정안)
  -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등에 적용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 
(안 제22조제2항) 이자율 : 8%(현행) ⇒ 6%(개정안)
  -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(안 제22조제3항)  
이자율 : 8%(현행) ⇒ 6%(개정안)
-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적용 배제
  -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 적용하는 특례내용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적용 배제 (안 제23조의2 제1항)

○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설정

- 대부료 및 사용료, 매각대금,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지하는 연체이자율을 차등 인하하고,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 (안 제28조제1항)

○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적용

- 청사·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지방청사·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, 행정수요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(안 제47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장순근)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청사 등의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줌으로서 이를 개정 코자 하는 것으로서
-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등과 군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므로 인하여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
- 이자율 등을 인하함으로서 세입의 감소에 문제가 없는지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며, 앞으로 군청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적합토록 적정규모의 설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,
-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장 관사관리의 제50조 등 몇 개 조항의 일부분은 군수 관사의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삭제할 필요성은 없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.

- 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점이 있는 공유재산을 발굴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략

##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